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4. 1.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개요	1
II.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총괄)	9
III.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11
IV.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22
V. 부패실태 평가 결과	35
VI. 심층 분석	36
VII. 향후 계획	38

붙임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등급표

1.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 목적 및 근거

- (목적) 지방의회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측정·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2조(기능)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기관

- 총 92개 지방의회 : 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시의회)

□ 평가체계

- (체계) 청렴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실적) - 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

청렴체감도 (80%)	√ 의회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청렴노력도 (20%)	√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 + 시책효과성 평가
부패실태 감점 (최대 10%)	√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23년 평가 특징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통합평가 체계로 개편됨('21.12.)에 따라 지방의회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도입하되, 지방의회 특수성을 반영해 체감도·노력도 비중*, 세부항목·지표, 감점 재구성

* 지방의회 수행업무, 조직운영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 반영 비중(20%)은 타 공공기관(40%)과 다르게 설정

※ 체감도·노력도 반영 비중은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의견조사(델파이기법)를 통해 산출

○ 청렴체감도 측정 항목 재구성

- 지방의회 업무 및 구성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존 의회모형을 유지하되, 업무 현황을 반영한 인사업무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등 청렴체감도 항목 재구성

※ 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제외 의견이 다수 제기된 항목(선심성 예산편성,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은 삭제

○ 청렴노력도 평가 실시

- 각급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을 사전 설정된 지표를 통해 평가하여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는 청렴노력도 평가를 지방의회에도 처음으로 실시
- 최초로 청렴노력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필수적인 핵심지표 위주 평가로 기관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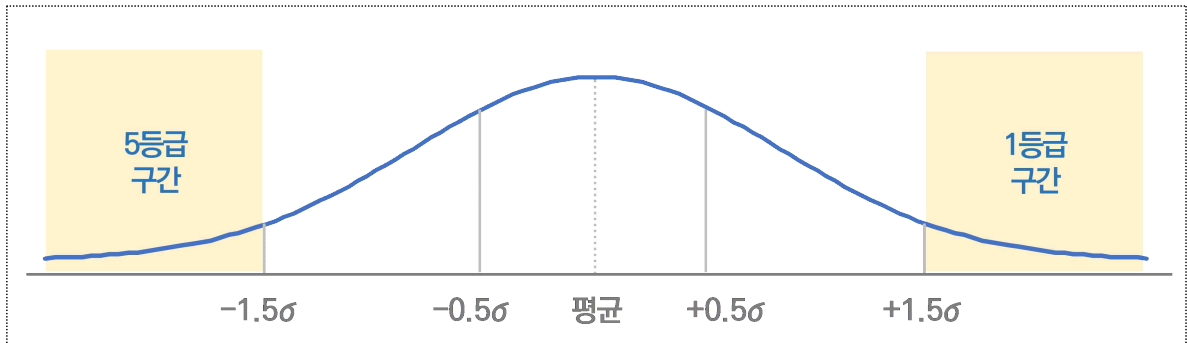
○ 부패실태 평가 강화

- 반부패 법령 관련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부패사건을 종합청렴도 총점에서 감점으로 반영(최대 10점)

※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통보한 부패사건도 감점에 포함

□ 결과 산정

-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
 - 기관별 등급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 구간을 산정 →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 부여



※ 단, 표준편차로 인해 1등급선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등급선은 100점으로 함

- 17개 광역의회, 75개 기초의회(시) 각각 단일 유형

2. 청렴체감도 평가 개요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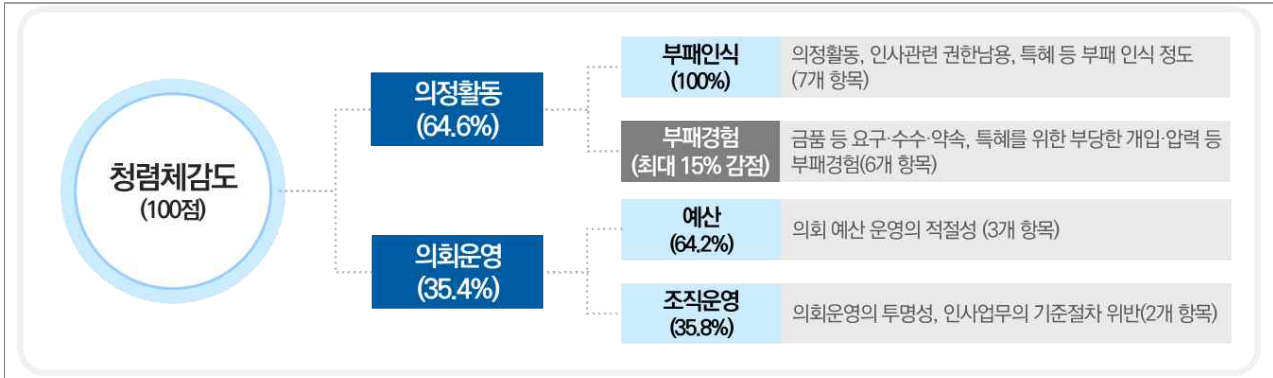
- 직무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정활동, 의회운영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

구분	내용
측정 대상	▶ (직무관련 공직자) 지방의회, 지자체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 ▶ (단체 및 전문가) 경제사회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전문가 등 ▶ (지역주민) 해당지역의 주민대표 및 일반주민
측정 방법	▶ (구성)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 부패인식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 방식,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 (방법) 전화,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 병행 ※ 응답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률 제고

□ 평가 모형

- (전체) 의정활동(64.6%) 영역과 의회운영(35.4%) 영역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가중합산

< 청렴체감도 측정 체계 >



※ 영역별 가중치 및 설문 항목별 가중치는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의견조사 (델파이기법)를 통해 산출

- (의정활동)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

< '23년 의정활동 측정 항목 >

구분		세부항목	가중치
의정활동	부패 인식	•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17.8%
		• 인사 청탁·개입	18.2%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16.5%
		•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11.6%
		•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7.2%
		•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13.8%
		•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14.9%
	부패 경험	•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31.3%
		•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19.4%
		•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9.9%
		•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13.1%
		• 권한을 넘어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11.3%
		•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	15.0%

- (의회운영)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인사 위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

< '23년 의회운영 측정 항목 >

구분		세부항목	가중치
의회운영	예산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44.1%
		• 외유성 출장	31.2%
		• 공용물 등 사적이용·목적외 사용	24.7%
	조직운영	• 투명한 업무처리	48.2%
		•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51.8%

□ 평가 방법(설문조사)

- 설문 대상자 : 총 34,210명

구분	규모(명)	조사대상
직무관련 공직자	7,085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소속 직원 * 의회 직원 687명,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직원 6,398명
단체 및 전문가	7,161	경제·사회·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전문가 등 * 단체 4,819명, 전문가 2,342명
지역주민	19,964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일반주민 * 이·통장 4,792명, 일반주민 15,172명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설문
* '22. 7. 1. ~ '23. 6. 30.
- 조사 방법 : 전화,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 조사 기간 : '23. 8월 ~ 11월
- 신뢰 수준 : 직무 관련 공직자 95%, ± 2.4 점/ 단체 및 전문가 95%, ± 1.4 점/
지역주민 95%, ± 1.1 점

3. 청렴노력도 평가 개요

□ 개요

- 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을 사전 설정된 지표를 통해 평가하여 반부패 시책의 자율적 추진 기반 마련하고 반부패 노력을 유도

□ 평가 지표 : 총 7개

- 지방의회의 업무 특성, 인적구성 등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핵심 지표 위주로 구성된 특화모형 적용(총 7개 지표)
- 추진체계(1개) - 추진실적(5개) - 시책효과성(1개)으로 구성



< 청렴노력도 세부 지표 >

연번	구 분	평가요소 및 지표	배점
1	추진체계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30점
2	추진실적	②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30점
3	추진실적	③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10점
4	추진실적	④ 부패 유발요인 정비	20점
5	추진실적	⑤ 가점 지표 - 부패방지 제도 구축 등	각 5점 (최대 10점)
6	추진실적	⑥ 감점 지표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등	각 1~3점 (최대 11점)
7	시책 효과성 평가	⑦ 반부패 시책(5개)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	10점

□ 평가 방법

-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외부(별도 용역) 및 내부(소관 부서)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
 - 기관의 이의제기 및 검토, 국민권익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실적 확인 후 기관별 청렴노력도 점수 산출
- ※ 대상기간 : '22. 11. 1. ~ '23. 9. 30.
- 시책효과성 평가 지표는 설문조사 결과 활용

4. 부패실태 평가

□ 개요

- 평가기간('22.7.1.~'23.11월) 중 기관의 부패행위 발생현황을 점수화 하여 평가에 반영
- ※ 자세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참고

□ 평가 기준

- (대상)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상감경 불문경고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혐의)가 확인된 사건
 -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통보한 부패사건
- (유형) 반부패 법령* 관련 부패사건,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사건, 직무관련 성 비위 사건
 -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반영)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외부적발(국민권익위, 공수처, 검·경찰, 감사원, 상급 감독기관 등) 사건 반영

□ 평가 방법

- (정량) 부패행위자의 직위, 기관 총 부패금액, 기관 정원규모, 부패 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

* 3년 이내('21년 ~ '23년) 발생한 사건은 가중,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감경 반영

- (정성) 주요 부패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현장, 서면)를 통해 정성평가

※ (주요 부패사건)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등

(외부적발) 전체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5건) 이상, 외부 적발비율 50% 초과

5. 신뢰도 저해행위 등 제재 조치

□ 개요

- 종합청렴도 평가과정에서 호의적 답변 유도, 각종 자료 누락·조작, 지연제출 등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제재

※ 자세한 제재기준·규모 및 방법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참고

□ 제재 대상

- (유형) 명부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허위·조작 제출 등

※ 대상기관 현지점검, 상시 제보 및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응답 등을 통해 적발

□ 제재 방법

-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제재 조치 필요성 및 정도(주의·경고, 감점 등) 심의·결정

□ 종합청렴도 점수 현황

○ 2023년 92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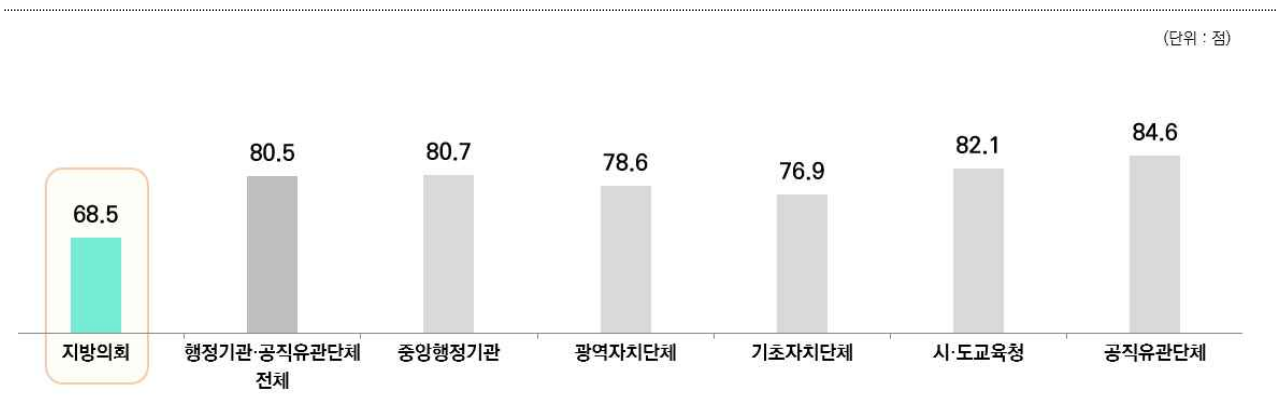
- 점수가 높을수록(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을 의미

※ 평가모형 전면 개편으로 '21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락 및 시계열 분석 미 실시('22년 평가 미 실시)

○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5점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낮은 점수인 기초자치단체(76.9점)보다도 8.4점 정도 낮은 수준

<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



□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은 65.6점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73.9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는 가장 낮게 나타남

- 부패경험률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 (16.33%)이 가장 높고,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률 (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8.36%) 순

-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정도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은 68.3점
 - ‘공용물 등 사적이용·목적외 사용’(76.5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유성 출장’(61.9점)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응답자유형별로는 단체 및 전문가(75.5점), 지역주민(64.5점), 직무 관련 공직자(60.6점) 순으로 나타남

□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 전체의회의 청렴노력도 평균 점수는 77.2점
- 총 7개 평가지표 중 ‘부패유발요인 정비’ 지표가 가장 높고, ‘시책 효과성 평가’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별 점수 >

반부패추진 계획 수립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제고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부패유발 요인정비	가점	감점	시책 효과성 평가	종합
74.6	72.4	77.2	82.1	3.7	-0.8	63.2	77.2

- 올해 최초 평가 실시에 따라 공정채용 규정마련,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마련 등 관련 지표 이행에 노력했으나,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및 이수현황 공개율 등 지표 달성률 저조

□ 부패실태 평가 (감점)

- 3개 기관에서 전체 3건이 발생하여 평균 3.1점 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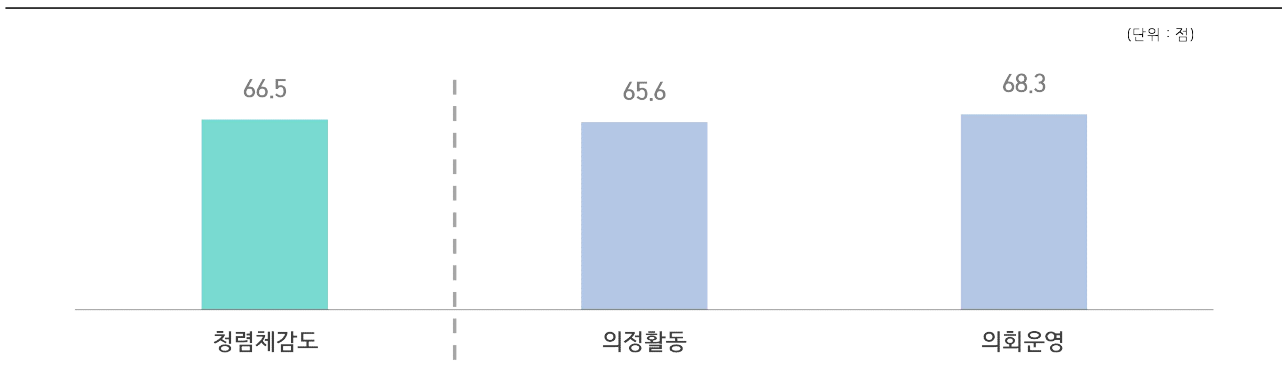
□ 신뢰도 저해행위 등 제재 조치 (감점)

- 청렴노력도 실적 제출 지연으로 19개 기관 평균 0.6점 감점

1. 청렴체감도 영역 전반

- 전체 지방의회(92개) 청렴체감도는 100점 만점에 66.5점
-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하는 의정활동 영역은 65.6점(가중치 64.6%), 의회의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정도 등을 평가하는 의회운영 영역은 68.3점(가중치 35.4%)
-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영역 간 비교시 의회운영 영역(68.3점)이 의정활동 영역(65.6점)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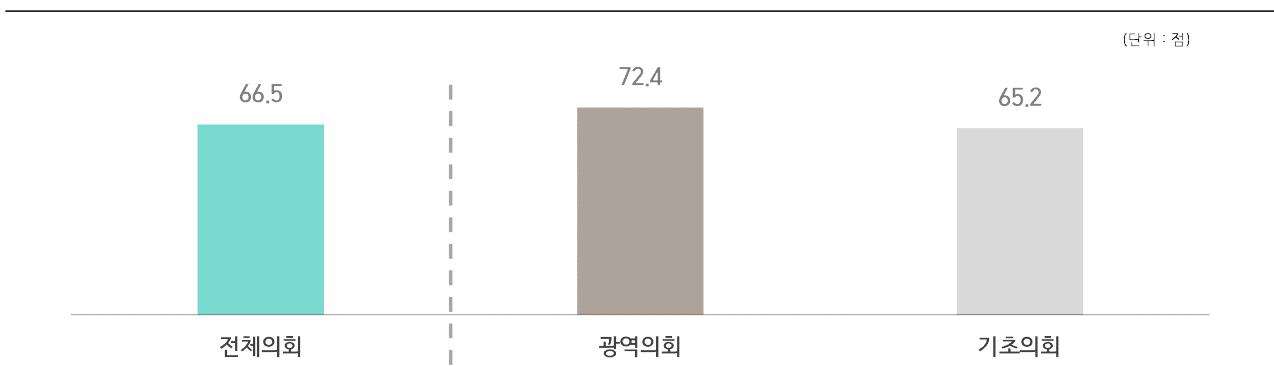
<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및 영역별 점수 >



※ 점수가 높을수록(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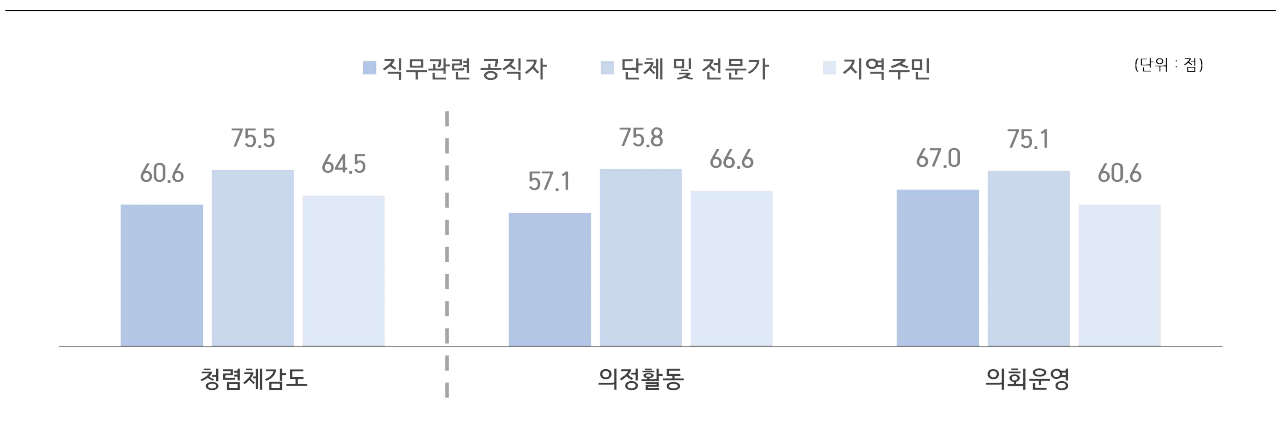
-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의회(72.4점)가 기초의회(65.2점) 보다 높음

< 기관유형별 청렴체감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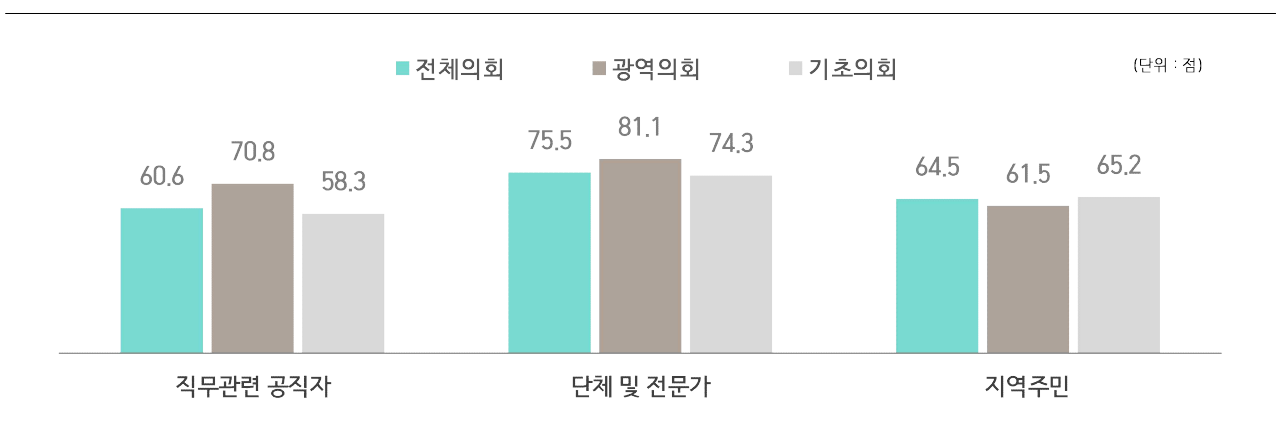
- 응답자유형별 전체의회의 청렴체감도는 단체 및 전문가(75.5점) 점수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64.5점), 직무관련 공직자(60.6점) 순
-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영역 모두 단체 및 전문가가 가장 높게 평가
- 측정 영역별로 보면,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은 의정활동을, 직무관련 공직자는 의회운영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응답자유형별 영역별 청렴체감도 점수 비교 >



- 기관 유형별로 보면, 직무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는 광역의회를 지역주민은 기초의회를 더 높게 평가

< 응답자유형별 기관유형별 청렴체감도 점수 비교 >



2. 의정활동

[1] 전반

- 의정활동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65.6점
-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총 13개 항목으로 측정
- ※ 의정활동은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로 부패경험의 경우 최대 15점 감점으로 변환하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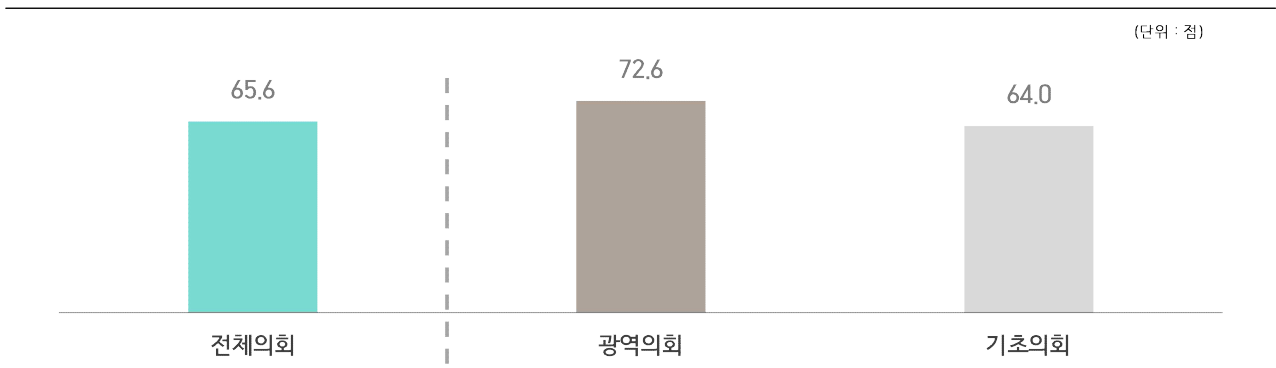
< 의정활동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부문	항목(가중치)	전체	광역	기초
의정활동 점수		65.6	72.6	64.0
	부패 인식	70.1	75.5	68.9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0.178)	72.4	76.4	71.5
	인사 청탁·개입(0.182)	71.6	79.4	69.8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0.165)	67.0	71.6	65.9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0.116)	64.2	69.5	63.0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0.072)	72.5	76.6	71.6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0.138)	68.5	72.6	67.6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0.149)	73.9	80.4	72.4
	부패 경험 감점(최대 15점)	-4.5	-2.9	-4.9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0.313)	79.6	86.0	78.2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0.194)	79.0	88.4	76.9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0.099)	64.0	79.1	60.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0.131)	60.2	71.5	57.7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0.113)	55.4	69.2	52.2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0.150)	61.7	78.6	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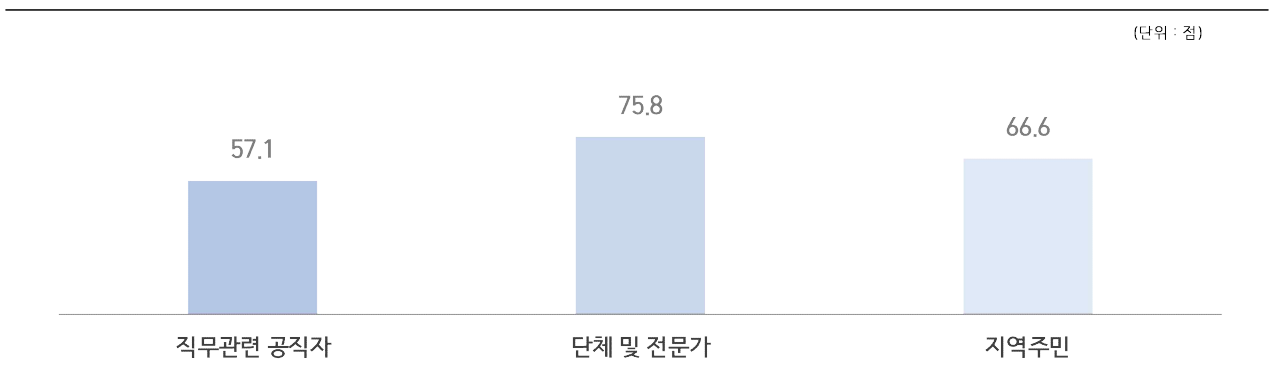
○ **광역의회(72.6점)**가 기초의회(64.0점)보다 **의정활동 영역 높은 점수**

< 기관유형별 의정활동 점수 >



○ **단체 및 전문가(75.8점)**가 지역주민(66.6점), 직무관련 공직자(57.1점)보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높게 평가**

< 응답자유형별 의정활동 점수 >



< 참고 > 지방의회의 '책임성', '신뢰성', '반부패 수준 개선' 관련 항목 분석

-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65.9점)이 '반부패 수준 개선도'(62.2점), '의회 신뢰도'(61.7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직무 관련 공직자는 '의회 신뢰도'를, 단체 및 전문가는 '반부패 수준 개선도'를 가장 낮게 평가
- ※ 청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 '의회 신뢰도', '반부패 수준 개선도'를 참고설문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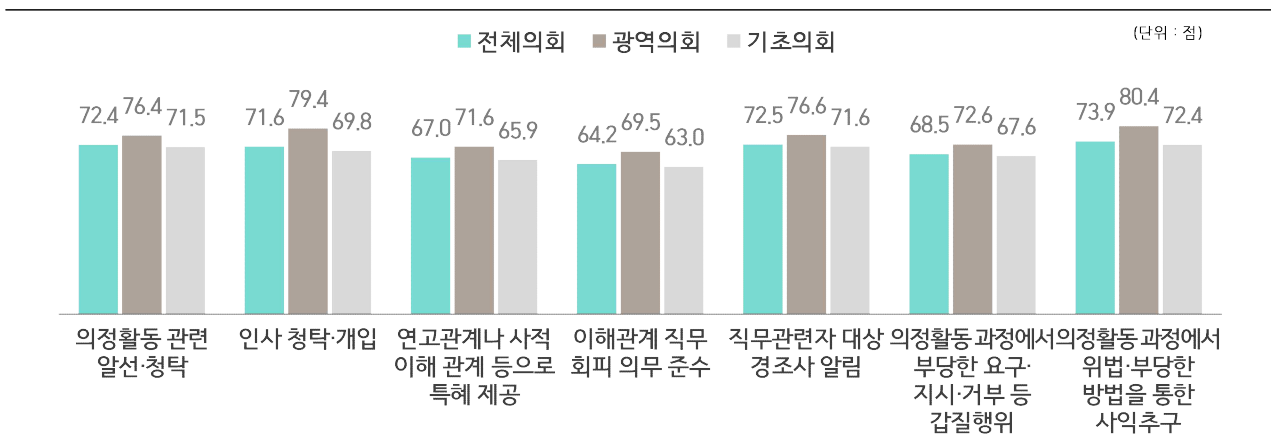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	의회 신뢰도	반부패 수준 개선도
전체	65.9	61.7	62.2
직무 관련 공직자	63.9	56.9	60.8
단체 및 전문가	71.4	69.1	68.3
지역주민	61.4	58.1	56.3

[2] 부패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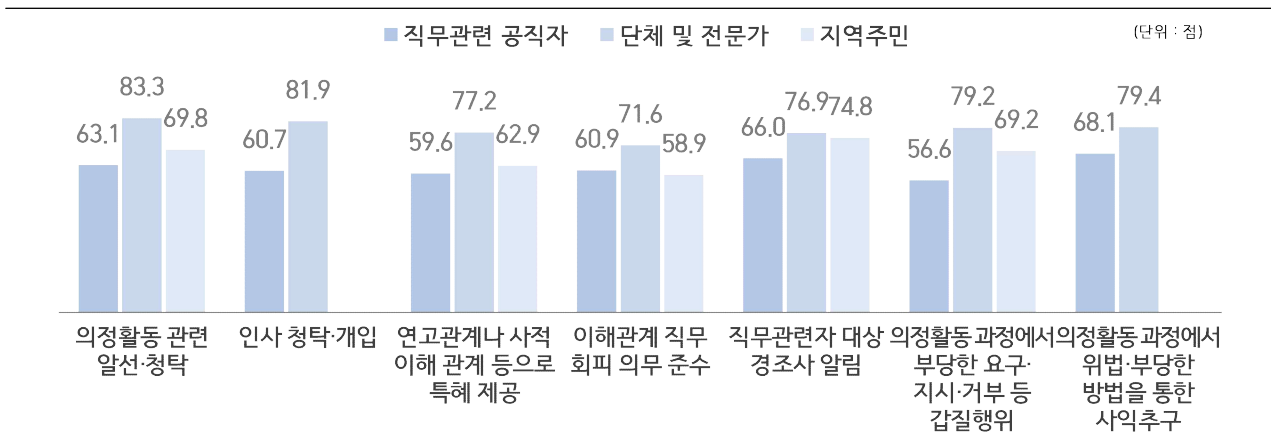
- 의정활동 부패인식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1점
-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73.9점)가 가장 높고,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가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의회(75.5점) 의정활동 부패인식 점수가 기초의회(68.9점)보다 높은 수준
 -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보다 광역의회의 부패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남
 -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점수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난 항목은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광역 76.4점, 기초 71.5점), 부패인식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인사청탁 개입’(광역 79.4점, 기초 69.8점)임

< 의정활동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



- 응답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직무관련공직자는 ‘의정활동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68.1점), 단체 및 전문가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83.3점), 지역주민은 ‘직무관련 경조사 알림’(74.8점) 점수가 가장 높음
- 전반적으로 단체 및 전문가의 의정활동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가 직무관련공직자, 지역주민에 비해 높은 편

< 응답자유형별 의정활동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비교 >



※ ‘인사 청탁·개입’,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항목은 지역주민 미측정

○ ‘21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당시와 유사한 항목의 변화추이를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21년에 비해 부패인식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광역의회의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의 개선 폭이 가장 낮음

- 기초의회의 경우,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관련 부패 인식 점수가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인식이 60점대 수준으로 정체

< 기관유형별 의정활동 부패인식 항목별 비교(’21년, ’23년) >

(단위: 점)

구분	광역의회			기초의회		
	’21	’23	변화	’21	’23	변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71.2	76.4	+5.2	71.6	71.5	-0.1
인사 청탁·개입	67.0	79.4	+12.4	66.0	69.8	+3.8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60.7	71.6	+10.9	63.4	65.9	+2.5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61.2	69.5	+8.3	62.1	63.0	+0.9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69.3	76.6	+7.3	70.6	71.6	+1.0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66.8	72.6	+5.8	68.3	67.6	-0.7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71.2	80.4	+9.2	70.7	72.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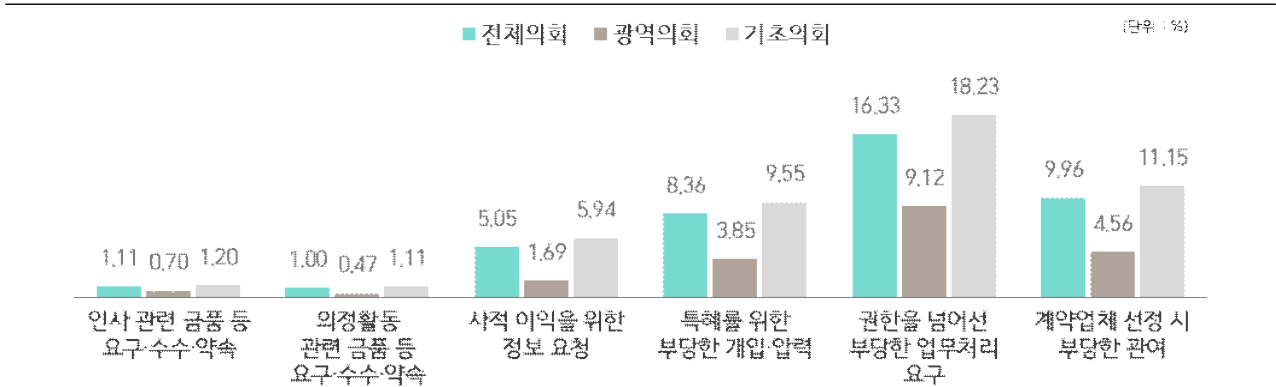
※ ’21년도 부패인식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비교

※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로 개편되어 평가 결과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제한되나 ’21년 이후 측정이 유지된 항목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분석 실시

[3] 부패경험

- 전체 의회의 부패경험률은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16.33%)이 가장 높고,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률(9.96%) 순임
- 기초의회의 부패 경험률이 모든 항목에서 광역의회보다 높음

< 의정활동 부패경험률 항목별 현황 >



- ※ 광역의회 항목별 부패경험률 보다 약 1.7배 ~ 3.5배 높은 수준
- ※ 부패경험률이 낮을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부패경험률 추이를 살펴보면, 기초의회의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은 여전히 두 자리 수 수준

< 기관 유형별 부패경험률 추이('21년, '23년) >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21 (%)	'23 (%)	변화 (%p)	'21 (%)	'23 (%)	변화 (%p)	'21 (%)	'23 (%)	변화 (%p)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2.42	1.11	-	2.64	0.70	-	2.36	1.20	-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2.25	1.00	-	2.10	0.47	-	2.29	1.11	-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경험률	16.28	5.05	-11.23	10.68	1.69	-8.99	18.84	5.94	-12.90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경험률	16.97	8.36	-8.61	12.00	3.85	-8.15	19.25	9.55	-9.70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	23.54	16.33	-7.21	17.96	9.12	-8.84	26.09	18.23	-7.86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률	13.13	9.96	-3.17	10.73	4.56	-6.17	13.75	11.15	-2.60

- ※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및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은 '21년과 설문 문항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려움

- 올해 부패행위 경험자의 빈도, 규모에 대해 참고적으로 조사한 결과,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자 1인당 평균 빈도는 연간 약 2.1회, 평균 규모는 71.2만원
- 경험률(16.33%)이 가장 높은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자의 1인당 평균 빈도(3.75회)도 가장 많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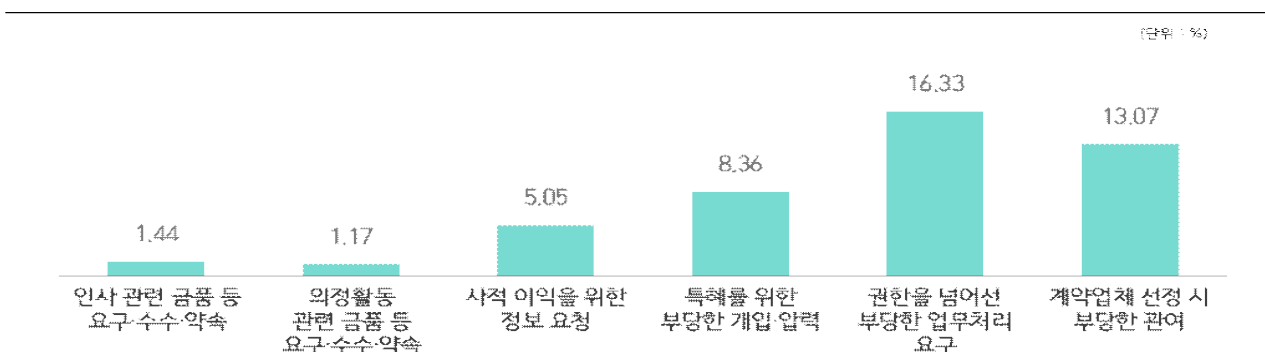
< 의정활동 부패경험 빈도 및 규모 >

구분	경험률 (%)	총빈도 (회)	총규모 (만원)	응답자 1인당		경험자 1인당	
				평균빈도 (회)	평균규모 (만원)	평균빈도 (회)	평균규모 (만원)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1.11	336	11,246	0.02	0.79	<u>2.13</u>	<u>71.2</u>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1.00	297	8,124	0.02	0.57	<u>2.09</u>	<u>57.2</u>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경험률	5.05	1,007	-	0.14	-	2.81	-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경험률	8.36	1,967	-	0.28	-	3.32	-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	<u>16.33</u>	4,337	-	0.61	-	<u>3.75</u>	-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률	9.96	4,430	-	0.31	-	3.12	-

※ 부패경험 빈도 및 규모는 참고지표로 점수에는 미반영

- 직무관련공직자의 부패경험률은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16.33%)이 가장 높고,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경험률(13.07%),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8.36%) 순

< 직무관련공직자 부패경험률 현황 >



- 단체 및 전문가의 부패경험률은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가 6.88%로 가장 높고, 인사 및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경험률은 각각 0.78%, 0.82% 수준

3. 의회운영

[1] 전반

- 의회운영 영역의 체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8.3점**
 - 의회운영의 세부 측정 부문 중 예산은 69.3점, 조직운영은 66.5점
-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인사 위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총 5개 항목으로 측정

< 의회운영 항목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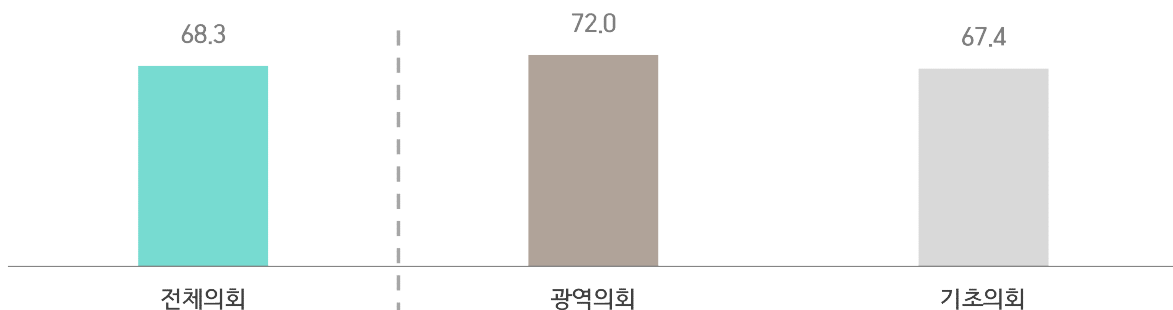
(단위 : 점)

부문	항목(가중치)	전체	광역	기초
의회운영 점수		68.3	72.0	67.4
예산		69.3	72.0	68.6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0.441)	70.4	73.4	69.7
	외유성 출장(0.312)	61.9	64.7	61.3
	공용물 등 사적이용·목적외 사용(0.247)	76.5	78.7	76.0
조직운영		66.5	72.1	65.3
	투명한 업무처리(0.482)	65.6	69.8	64.7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0.518)	67.3	74.2	65.8

-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의회의 의회운영 점수(72.0점)가 기초의회의 의회운영 점수(67.4점) 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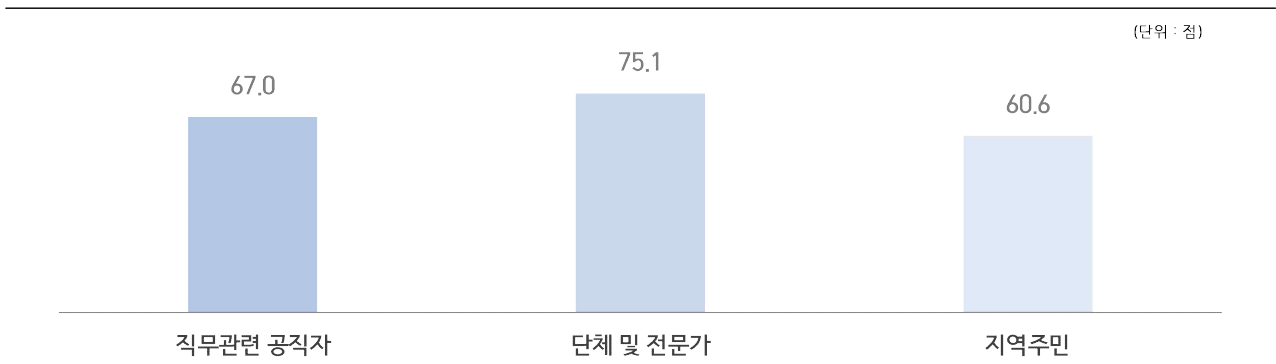
< 기관유형별 의회운영 점수 >

(단위 : 점)



- 단체 및 전문가의 의회운영 점수(75.1점)가 응답자유형 중 가장 높았으며, 직무관련 공직자(67.0점), 지역주민(60.6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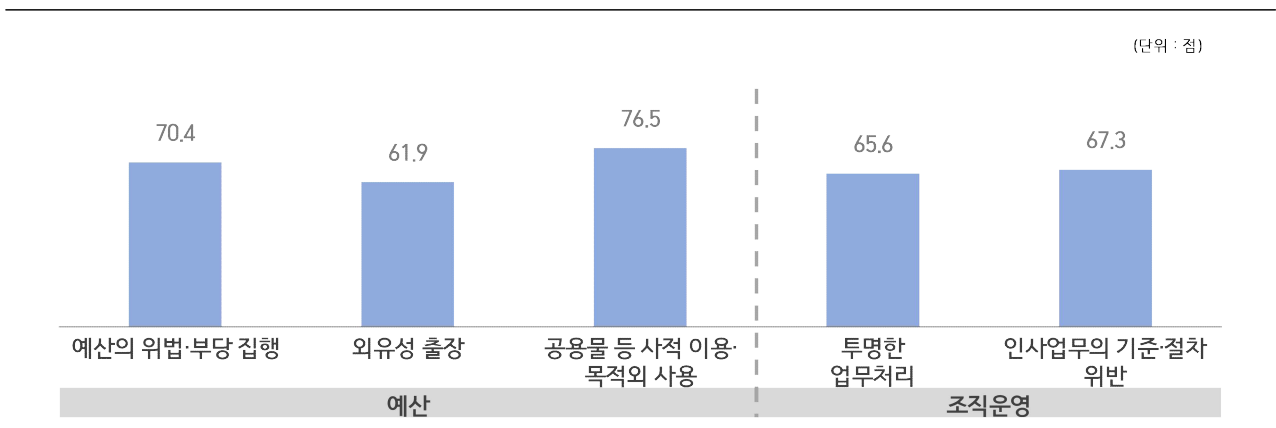
< 응답자유형별 의회운영 점수 >



[2] 예산 및 조직운영

- 예산 부문의 항목별로는 '공용물 등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76.5점)이 가장 높고, '외유성 출장'(61.9점)이 가장 낮은 점수
- 조직운영 부문의 항목에서는 올해 신규로 측정한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67.3점)이 '투명한 업무처리'(65.6점) 보다 높게 평가

< 의회운영 세부항목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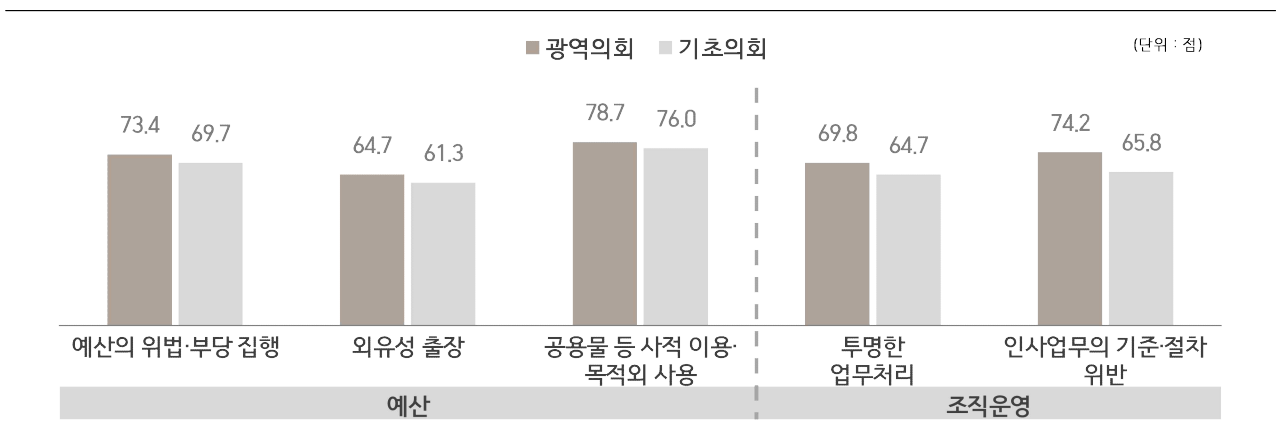
- 의회운영 세부항목 중 '21년과 동일 항목 점수를 비교해보면, 예산의 위법·부당집행은 다소 상승(+1.9점)했고, 투명한 업무처리는 크게 하락(-3.9점)

※ '21년 의회 운영 세부항목 점수 :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68.5점, 외유성 출장 64.6점, 공용물 등 사적이용·목적외사용 76.0점, 투명한 업무처리 69.5점

○ 광역의회가 의회운영의 모든 항목에 대해 기초의회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이고, 전반적인 경향성도 유사

- 다만, '인사업무의 기준절차위반'의 경우, 광역의회(74.2점)에 비해 기초의회(65.8점)의 점수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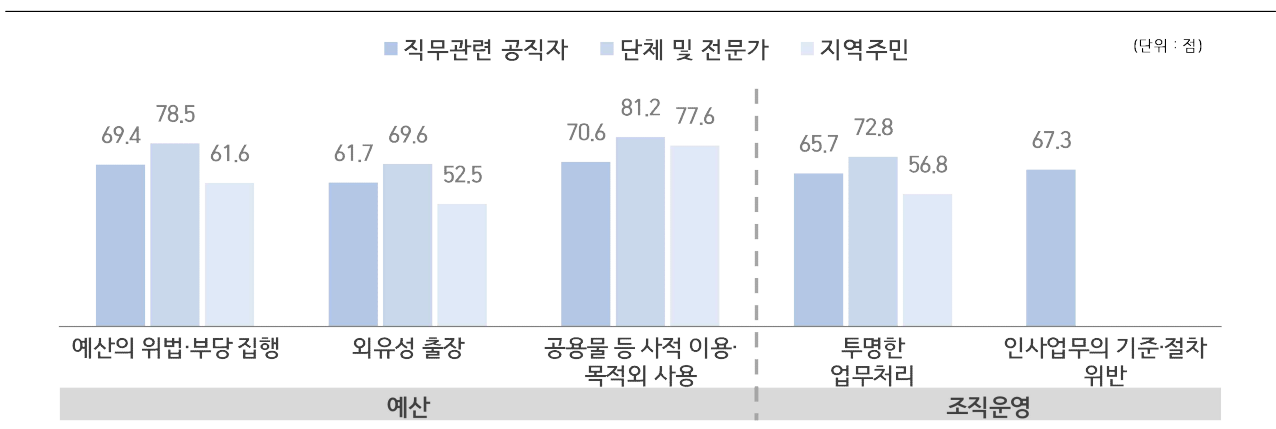
< 기관유형별 의회운영 세부항목별 점수 >



○ 응답자유형별로는 단체 및 전문가가 다른 응답자 유형보다 대부분의 항목을 높게 평가하였고, '공용물 등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81.2점)을 가장 높게 평가

- 공용물 등 사적이용 목적외 사용(70.6점)은 직무관련공직자가, 예산의 위법부당집행(61.6점), 투명한 업무처리(56.8점), 외유성 출장(52.5점)은 지역주민이 가장 낮게 평가

< 응답자유형별 의회운영 세부항목별 점수 >



※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미측정

IV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1. 청렴노력도 영역 전반

- 전체 지방의회(92개)의 청렴노력도는 100점 만점에 77.2점
 -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의회의 점수(90.5점)가 기초의회의 점수(74.2점)보다 높게 나타남
 - 지표별로는 추진체계, 추진실적, 시책효과성 평가 3개 부문 7개 지표 중 ‘부패 유발요인 정비’ 지표의 점수(82.1점)가 가장 높고, ‘시책 효과성 설문’ 지표의 점수(63.2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 부패유발요인 정비는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조항’을 자체 규정으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표임

< 청렴노력도 각 지표별 점수 >

(단위 : 점)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청렴노력도		77.2	90.5	74.2
추진체계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74.6	86.0	72.0
추진실적	②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72.4	87.8	68.9
	③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77.2	94.1	73.3
	④ 부패 유발요인 정비	82.1	90.4	80.2
	⑤ 가점지표	+3.7	+5.5	+3.3
	⑥ 감점지표	-0.8	-0.8	-0.8
시책 효과성	⑦ 반부패 시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	63.2	71.9	61.2

2. 지표별 평가결과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평가지표) 기관의 반부패 추진계획 평가를 통해 기관의 업무특성·청렴도 결과 분석 등을 통한 자율적 추진계획 수립 및 조직 전반의 청렴수준 향상 유도

※ 세부 평가기준 : ① 반부패 시책 추진의 적정성·다양성·참신성 ③ 기관별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의 구체성·실행 가능성 등

- (평가결과)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의 평균점수는 74.6점

- 광역의회의 평균점수는 86.0점, 기초의회의 평균점수는 72.0점

- (주요성과) 평가대상 92개 의회 중 91개 의회(98.9%)가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여건 분석, 추진 목표 및 과제 설정, 추진 일정을 체계화하여 반부패 청렴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지방의회 고유의 업무 여건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부패 취약분야 분석 및 대책 마련·추진으로 기관의 청렴성 향상 노력 강화

- 반부패추진 계획수립 등급이 높을수록 청렴체감도, 시책효과성 인식 점수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보여줌

< 반부패추진 계획수립 실적별 청렴수준 인식 >

구분	기관수	기관 청렴 체감도(점)			시책 효과성 인식(점)
		청렴체감도	의정활동	의회운영	
전체	(92)	66.5	65.6	68.3	63.2
1~2등급	(23)	67.7	66.9	69.1	65.3
3등급	(41)	66.5	65.6	68.1	63.4
4~5등급	(27)	65.7	64.6	67.8	61.5
미제출	(1)	-	-	-	-

- (보완사항) 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진단·분석이 보다 다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추진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 기관별 청렴도 평가 결과, SWOT분석,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국민·자문단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

- 일부 기관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청렴노력도 지표별 이행방안과 일정만 나열하고 있어 효과에 한계
- 또한, 개선대책의 구체성을 보완하여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선과제 발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사례 》

① [충청남도 의회] 전략적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 청렴도 측정결과, 환경분석, 언론 자료 분석을 통해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를 진단하고, 반부패·청렴시책의 방향 및 전략 도출
- 과제별 중요성과 시급성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우선 추진과제 선정
- ‘청렴실천홍보실무연구(청실홍실)’를 위한 지식동아리 운영, 의장을 포함한 간부진과 실무진 간 청렴 레터(청렴 관련 지식·지혜·체험담 공유, 청렴시책제안 등) 상호 교환 프로그램 등 독창적인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시행

② [경상북도 의회] 조직문화·인식개선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

- 부패취약분야 및 취약 요인 분석을 위해 청렴도 측정 결과, 외부 자문위원 의견청취 등 다양한 분석수단 활용
- 청렴수준 개선을 위해 조직문화, 인식개선 등 다양한 과제들을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 간 소통 협력 기반으로 청렴대책 추진본부를 구성·운영

[2]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평가지표)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평가

* 지방의원, 의회사무처 3급 이상(광역) 공직자(기초 4급 이상 공직자)

- (평가결과)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의 평균점수는 72.4점
 - 평가 대상 지방의회 전체 의원 및 고위직(2,259명)의 76.8%(1,736명)가 청렴교육을 이수

※ 100% 이수율을 보인 기관 56개(60.9%)

< 기관유형별 지표 실적 >

구분	기관 수	고위직 이수율									점수 (점)
		전체 이수율(명,%)			기관별 이수율(개,%)						
		대상 인원	이수 인원	이수율	100%	80% 이상	50% 이상	50% 미만	0%	평균	
전체	(92)	2,259	1,736	76.8	56	14	3	4	15	77.7	72.4
광역의회	(17)	896	751	83.8	13	1	2	1	0	92.3	87.8
기초의회	(75)	1,363	985	72.3	43	13	1	3	15	74.4	68.9

- (주요성과) 반부패 법령·제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이해를 제고하여 지방의원으로서의 업무에 맞춘 반부패 대응 방안과 원칙을 수립하는 기반을 제공
 -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100%인 기관은 이수율이 100%미만인 기관보다 청렴체감도 점수, 특히 시책효과성의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점수가 높게 나타나 청렴교육이 고위직의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위직 청렴교육 실적별 청렴수준 인식 >

구분	기관수	기관 청렴체감도(점)			시책효과성 인식(점)	
		청렴체감도	의정활동	의회운영	종합	기관장 의지와노력
전체	(92)	66.5	65.6	68.3	63.2	64.2
100% 이수	(56)	67.9	67.1	69.3	65.2	66.2
0%~100%미만	(36)	64.5	63.3	66.7	60.0	61.1

○ (보완사항) 일부 기관은 일회성 교육을 통해 이수율 충족에만 그치는 등 형식적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 반부패·청렴문화와 관련 규범이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

- 15개(16.3%)의회는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이 0%이고, 지방의회 전체 고위직 이수율(76.8%)도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고위직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

※ 교육청 99.5% > 대학 97.2% > 공직 97.1% > 광역 96.0% > 기초 94.4% > 중앙 92.9% > 의료 78.9%('23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의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기준)

《 주요사례 》

① [울산광역시 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지방의회 맞춤형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활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지방의회 직무 관련 내용 위주의 맞춤형 교육 실시

② [전라남도 의회] 사례 중심 교육 시행

-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위반 주요 사례 중심 교육으로 구성원들의 청렴 역량 제고

[3]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 (평가지표) 내실있는 청렴교육 시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별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 평가
- (평가결과) 71개 기관(77.2%)에서 '22년도 청렴교육 이수율 등의 실적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 외부 공개

< 기관유형별 지표 실적 >

구분	기관수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개, %)		점수 (점)
		공개 기관수	비율	
전체	(92)	71	77.2	77.2
광역의회	(17)	16	94.1	94.1
기초의회	(75)	55	73.3	73.3

- (주요성과) 교육현황 대외 공개를 통해 청렴교육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 및 이행력이 강화되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특히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향상을 도모
- (보완사항) 전체 의회 중 약 22.8%(21개)에 해당하는 의회에서 청렴교육 이수현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공개하여, 공개 기관 비율이 올해 평가 대상인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광역=교육청=대학=의료 100.0% > 공직유관 99.5% > 기초 94.2% > 중앙 91.3% ('23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의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율 기준)

《 주요사례 》

① [전남 나주시의회] 청렴교육 세부 내용 공개

-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평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청렴교육 결과보고서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공개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

[4] 부패유발요인 정비

- (평가지표)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 노력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률을 평가
- (평가결과)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31개 조항 중 평균 21.9개 조항이 반영되어 82.1점
 - 52개(56.5%)의회는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31개 조항 전체를 기관 자체 규정으로 반영

< 기관유형별 지표 실적 >

구분	기관수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반영률(개)					점수 (점)
		100% (31개)	50% 이상	50% 미만	0% (0개)	평균 반영수	
전체	(92)	52	15	3	22	21.9	82.1
광역의회	(17)	13	3	0	1	27.7	90.4
기초의회	(75)	39	12	3	21	20.6	80.2

- (주요성과)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지방의회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근거규정 마련 및 확산을 통해 부패 개입 소지 감소
- (보완사항) 22개 지방의회(23.9%)의 경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관련 조항 반영 실적이 0%로 관련 규정 흠결에 따른 불공정 채용 예방 조치 필요

※ 광역, 기초자치단체(시) 중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화 미실시 기관은 9개 기관(9.8%)

《 주요사례 》

① 경기 용인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반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채용 비리통합신고센터) 사전 예비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의회만의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운영 매뉴얼 등을 마련

[5-1] 가점지표 : 부패방지 제도 구축

- (평가지표)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유도하여 부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권고과제 이행률을 평가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22.12.19.)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조치기한('23.12.) 이전에 조기 완료(~'23.9.30.)한 기관에 가점 부여
- ※ 세부권고과제 : 1)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2)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전액 또는 일부 감액)
- (평가결과) 부패방지 제도 구축의 가점 평균은 2.2점, 27개 의회(29.3%)는 두 개의 세부권고과제를 모두 이행
 -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의회(41개, 44.6%)가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의회(31개, 33.7%)보다 높은 비율임

< 기관유형별 지표 실적 >

구분	기관수	징계 관련 조항(개,%)		구속 관련 조항(개,%)		점수 (점)
		이행 기관수	비율	이행 기관수	비율	
전체	(92)	31	33.7	41	44.6	2.2
광역의회	(17)	8	47.1	10	58.8	2.8
기초의회	(75)	23	30.7	31	41.3	2.0

- (주요성과) 27개 의회가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조기에 이행 완료하여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보완사항) 여전히 47개 의회는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조치기한(~'23.12.) 내 이행완료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

《 주요사례 》

① [충청북도 의회] 징계·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전액 제한

- 제도개선 권고사항보다 엄격하게 의정비 지급 제한이 적용되도록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
- ①일반적인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 미지급, ②공소제기 후 구속 시 구속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감액 내용

[5-2] 가점지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평가지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 실적 평가
- (평가결과) 지방의회의 58.7%(54개)는 조례에 근거해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가점기관 54개)
 -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회의개최 횟수는 설치기관 기준 0.44회 실시 (전체 의회 기준 0.26회)

< 기관유형별 지표 실적 >

구분	기관수	운영현황(개,%)		회의개최 횟수(회)		점수 (점)
		설치 기관수	비율	설치기관 기준	전체기관 기준	
전체	(92)	54	58.7	0.44	0.26	1.6
광역의회	(17)	16	94.1	0.63	0.59	2.8
기초의회	(75)	38	50.7	0.37	0.19	1.3

- (주요성과)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위반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함으로써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라는 제도적 기반이 실효성을 갖게 됨

- (보완사항) 자문위원회는 구성하였으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향상 방안 모색 필요
- 지방의원 징계등의 안건이 없더라도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주요사례 》

① [전라북도 의회]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의 타당성 등을 논의함으로써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활용

② [경남 김해시의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후 행동강령 자가 진단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

[6] 감점지표

○ (평가지표)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신고 접수 처리 등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운영 여부
-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제출)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시 협조의무 이행 여부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노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이행 여부, 신고자 보호사건 협조도

○ (평가결과)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84개 의회(91.3%)에서 지정(감점기관 8개, 8.7%)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80개 의회(87.0%)에서 제정(감점기관 12개, 13.0%)
- (실태점검 자료 제출) 기관별 운영 현황 자료제출 등 실태점검 시 자료 제출 협조의무를 78개 의회(84.8%) 이행 완료(감점기관 14개, 15.2%)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노력)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결정 등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미이행한 지방의회 없음

< 기관유형별 지표 실적 >

구분	기관수	이해충돌 담당관 지정		이해충돌 운영지침 제정		이해충돌 실태 점검 자료제출		신고자보호 위반·자료제출		점수 (점)
		이행 기관수	비율	이행 기관수	비율	이행 기관수	비율	이행 기관수	비율	
전체	(92)	84	91.3%	80	87.0%	78	84.8%	92	100.0	-0.8
광역의회	(17)	14	82.4%	16	94.1%	15	88.2%	17	100.0	-0.8
기초의회	(75)	70	93.3%	64	85.3%	63	84.0%	75	100.0	-0.8

- (주요성과) 대다수 의회에서 제도운영 담당부서 및 담당관을 지정하고, 운영지침 제정을 유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시행 기반 마련
- (보완사항) 담당관 지정은 완료했으나, 담당관의 직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직무변화로 인해 이해충돌방지업무 수행의 일관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어 담당관의 직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주요사례 》

① [대구광역시 의회] 이해충돌방지 제도 적용 대상 명확히 규정

- 지침 적용 범위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과 의회 소속 공직자, 타 기관으로부터 의회에 파견된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의회 이해충돌방지 제도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② [경기 부천시의회] 부서별 이해충돌방지 사무 구체적으로 분장

- 입법정책과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입법정책과(의원에 관한 사항)와 의회운영과(의회직원에 관한 사항) 직원 각 1명을 이해충돌방지담당자로 지정하여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의원, 의회직원으로 구분하여 관리

[7] 시책효과성 평가

- (평가지표) 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시책*에 대한 구성원의 효과성을 평가

* 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②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③ 청렴교육 이행, ④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⑤ 갑질(행동강령) 개선노력

-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타 노력도 지표와 달리 청렴체감도 설문 과정에서 관련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 반영

※ 리커트 7점 척도 활용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설문실시

- (평가결과) '반부패 시책 효과성 평가'의 평균점수는 63.2점

- 각 평가 항목별로는 '청렴교육 이행'에 대한 체감 인식이 64.5점으로 가장 높고, '갑질 개선노력'이 61.1점으로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 지표 실적 >

구분	기관수	반부패 시책 효과성 평가(점)					점수 (점)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신고자 보호노력	갑질 개선노력	
전체	(92)	63.4	64.2	64.5	62.6	61.1	63.2
광역의회	(17)	72.2	72.8	72.9	71.3	70.3	71.9
기초의회	(75)	61.3	62.2	62.6	60.6	59.1	61.2

- (보완사항) 지방의회의 업무 및 구성원 특성 등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 추진이 필요

- 기초의회의 갑질 개선 노력 관련 내용 우선 추진 필요

V

부패실태 평가 결과

□ 부패사건 감점 현황

- 지방의회 감점 대상 부패사건은 총 3개 기관(3.3%), 3건
 - 감점 적용기관당 평균 부패사건 수는 1건, 평균 감점은 - 3.1점이며, 감점 적용기관 중 최대감점은 3.6점임
 - ※ '21년 감점 대상 부패사건은 4개 기관 총 8건, 감점 적용기관의 평균 감점은 4.0점('21년 감점 적용기관의 평균 감점 0.12점을 '23년과 동일한 기준(최대 10점)으로 환산한 점수)
- 감점 대상 부패행위의 총 부패금액은 370만원, 감점 발생 기관당 평균 부패금액은 123만원, 부패행위자 1인당 부패금액은 12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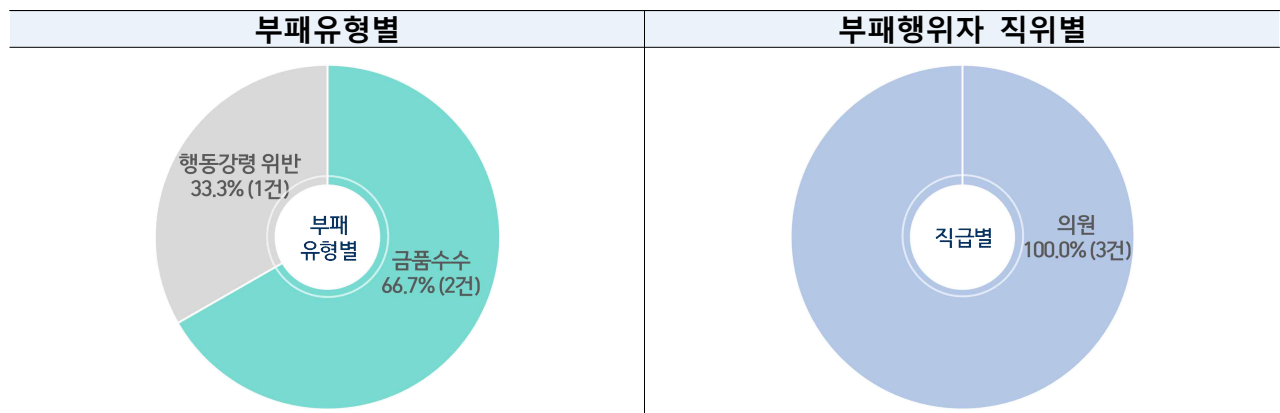
< 기관유형별 부패사건 감점 현황 >

기관유형	평가 대상 기관수	감점 기관		감점 사건		감점 현황	
		기관수	발생률(%)	전체 건수	감점기관 평균건수	전체기관 평균	감점기관 평균
전체	92	3	3.3	3	1.0	0.1	3.1
광역의회	17	-	-	-	-	-	-
기초의회	75	3	4.0	3	1.0	0.1	3.1

□ 부패행위 내용 및 금액

- 행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66.7%(2건), 행동강령 위반이 33.3%(1건)
- 부패 행위자는 의원 100%(3건)
 - ※ '21년 부패 행위자는 의원 7명, 사무처 직원 1명

< 부패유형별, 부패행위자 직위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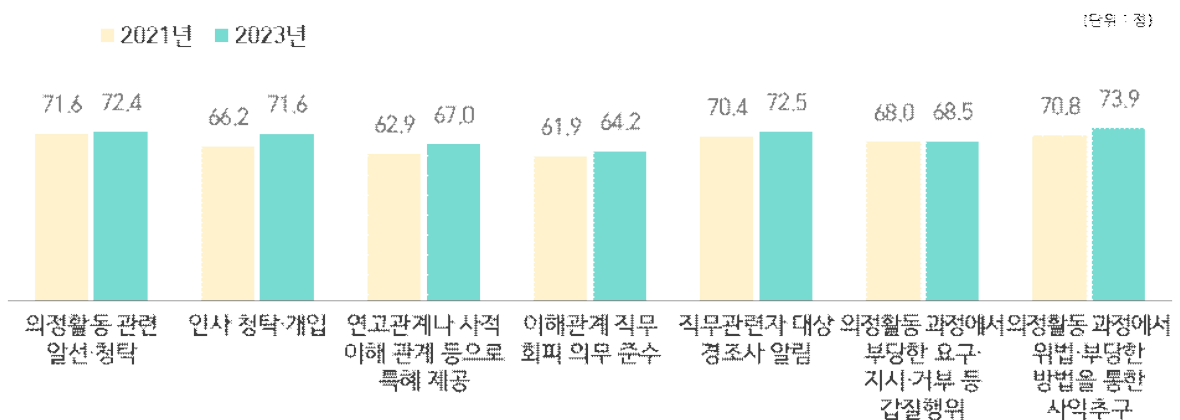
< 분석 배경 >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나타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부패인식, 부패경험 등에 대해 분석

□ 의원들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에 대해 가장 낮게 평가

- 의정활동 영역 부패인식 7개 항목 중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64.2점)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 여전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1년에 비해, ‘특혜제공’ 항목 점수(67.0점)가 개선되었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응답자들은 지방의회에서 연고 관계나 사적 이해 관계 등으로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인식
 -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사익추구 항목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73.9점)이지만, 행정·공직유관 사익추구 부패인식 점수(93.5점)에 비해 약 20점 낮은 수준
- ※ 행정·공직유관단체의 외부 민원인이 체감한 부패인식 점수 평균은 90.9점이었으며, 그 중 사익추구 점수는 93.5점이었음

< 의정활동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비교(’21년, ’23년) >



※ 부패인식 점수가 높을수록(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

□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등 부패경험률 지방의회에서 매우 높아

- 부패경험률 중 직무 관련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8.36%) 경험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
 -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도 응답자 10명 중 1명 꼴로 경험(9.96%)한 것으로 응답

< 의정활동 부패경험률 >

(단위 : %)

구분	계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권한을 넘어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지방 의회	15.51	1.11	1.00	5.05	8.36	16.33	9.96

※ 부패경험률이 낮을수록 청렴함(긍정적)

- 의정활동 관련 부패경험률(15.51%)은 민원인이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은 부패경험률(0.42%)이나, 내부 공직자가 조직운영과정에서 겪은 부패경험률(1.99%)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남
 - 행정기관 내부 공직자의 거래특혜·미공개 정보 제공 경험(0.15%)에 비해 지방의회의 직무관련공직자들이 겪는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경험(5.05%)이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음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부패경험률 >

(단위 : %)

구분	계	금품	향응	편의	채무면제· 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미공 개정보	운동부 불법찬조금
외부	0.42	0.15	0.14	0.18	0.08	0.06	0.03
내부	1.99	0.56	0.67	1.01	0.67	0.15	-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청렴체감도 조사 시 민원인, 공직자의 부패경험 응답으로 지방의회와 설문 내용이 달라 단순 비교 시에는 주의 필요

- 대상기관 **평가결과 공개**(~'24.1월, 기관 홈페이지) 및 공개 결과 제출(~'24.3월)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결과발표 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
- 우수기관 및 담당자 유공 포상('24.2월 예정)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시 취약분야 분석·활용(~'24.5월)

1. 광역의회 : 17개 기관

※ 등급 내 기관명 가나다순, 지방의회는 '22년 평가 미 실시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급	경상북도 의회	경상남도 의회 경상북도 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전라남도 의회 충청남도 의회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등급	경상남도 의회 울산광역시 의회 전라남도 의회 충청남도 의회	부산광역시 의회 전라남도 의회 충청남도 의회	경상북도 의회 광주광역시 의회 대전광역시 의회 울산광역시 의회 전라북도 의회	
3 등급	광주광역시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 대전광역시 의회 부산광역시 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전라북도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광주광역시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 대전광역시 의회 울산광역시 의회 전라북도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충청북도 의회	경상남도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4 등급	서울특별시 의회 충청북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경기도 의회 서울특별시 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부산광역시 의회 서울특별시 의회 충청북도 의회	
5 등급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경기도 의회	-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경기도 의회	

2. 기초시의회 : 75개 기관

※ 등급 내 기관명 가나다순, 지방의회는 '22년 평가 미실시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급	강원 동해시 의회 경기 동두천시 의회 전남 광양시 의회	강원 동해시 의회 경기 동두천시 의회 전남 광양시 의회	경기 구리시 의회 경기 부천시 의회 경기 양주시 의회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등급	강원 삼척시 의회 강원 춘천시 의회 경기 과천시 의회 경기 광주시 의회 경기 구리시 의회 경기 김포시 의회 경기 시흥시 의회 경기 양주시 의회 경기 여주시 의회 경기 의왕시 의회 경기 포천시 의회 경남 김해시 의회 경남 밀양시 의회 경남 진주시 의회 경남 창원시 의회 경남 통영시 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전북 정읍시 의회 충남 계룡시 의회 충남 당진시 의회 충남 보령시 의회	강원 삼척시 의회 강원 속초시 의회 경기 과천시 의회 경기 광주시 의회 경기 구리시 의회 경기 김포시 의회 경기 의왕시 의회 경기 포천시 의회 경남 거제시 의회 경남 김해시 의회 경남 밀양시 의회 경남 사천시 의회 경남 진주시 의회 경남 창원시 의회 경남 통영시 의회 전남 나주시 의회 전남 여주시 의회 전북 정읍시 의회 충남 계룡시 의회 충남 당진시 의회 충남 보령시 의회	강원 동해시 의회 강원 삼척시 의회 강원 춘천시 의회 경기 과천시 의회 경기 광주시 의회 경기 군포시 의회 경기 김포시 의회 경기 남양주시 의회 경기 동두천시 의회 경기 시흥시 의회 경기 안성시 의회 경기 안양시 의회 경기 여주시 의회 경기 의정부시 의회 경기 포천시 의회 경남 김해시 의회 경남 진주시 의회 경남 창원시 의회 경남 통영시 의회 경북 구미시 의회 전남 광양시 의회 전북 남원시 의회 전북 익산시 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충남 계룡시 의회 충남 당진시 의회 충남 보령시 의회 충북 청주시 의회	
3 등급	강원 강릉시 의회 강원 속초시 의회 경기 군포시 의회 경기 남양주시 의회 경기 부천시 의회 경기 안산시 의회 경기 안양시 의회 경기 의정부시 의회 경기 평택시 의회 경기 하남시 의회 경남 거제시 의회 경남 사천시 의회 경남 양산시 의회 경북 경산시 의회 경북 경주시 의회 경북 구미시 의회	강원 강릉시 의회 강원 춘천시 의회 경기 시흥시 의회 경기 안산시 의회 경기 안양시 의회 경기 양주시 의회 경기 여주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 경기 평택시 의회 경기 하남시 의회 경기 화성시 의회 경남 양산시 의회 경북 경산시 의회 경북 경주시 의회 경북 문경시 의회 경북 상주시 의회	강원 강릉시 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 경기 광명시 의회 경기 안산시 의회 경기 용인시 의회 경기 의왕시 의회 경기 파주시 의회 경기 하남시 의회 경남 거제시 의회 경남 밀양시 의회 경북 경산시 의회 경북 김천시 의회 경북 영주시 의회 경북 영천시 의회 전남 나주시 의회 전남 목포시 의회	

구 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3 년 평 가	전남 나주시 의회 전남 목포시 의회 전남 순천시 의회 전남 여주시 의회 전북 남원시 의회 전북 익산시 의회 충남 공주시 의회 충남 논산시 의회 충북 제천시 의회 충북 청주시 의회 충북 충주시 의회	전남 순천시 의회 전북 김제시 의회 전북 남원시 의회 전북 익산시 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충남 공주시 의회 충남 논산시 의회 충남 서산시 의회 충남 아산시 의회 충북 제천시 의회 충북 청주시 의회 충북 충주시 의회	전남 순천시 의회 전북 군산시 의회 전북 정읍시 의회 충남 공주시 의회 충남 논산시 의회 충남 천안시 의회 충북 제천시 의회	부패 실태 평가 (감점)
4 년 평 가	강원 원주시 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 경기 광명시 의회 경기 안성시 의회 경기 오산시 의회 경기 용인시 의회 경기 파주시 의회 경기 화성시 의회 경북 김천시 의회 경북 문경시 의회 경북 상주시 의회 경북 영주시 의회 경북 영천시 의회 전북 군산시 의회 전북 김제시 의회 충남 서산시 의회 충남 아산시 의회 충남 천안시 의회	= 강원 원주시 의회 경기 광명시 의회 경기 군포시 의회 경기 남양주시 의회 경기 부천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수원시 의회 경기 오산시 의회 경기 용인시 의회 경기 의정부시 의회 경기 파주시 의회 경북 구미시 의회 경북 안동시 의회 경북 영주시 의회 전남 목포시 의회 충남 천안시 의회	강원 원주시 의회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오산시 의회 경기 평택시 의회 경기 화성시 의회 경남 양산시 의회 경북 경주시 의회 경북 문경시 의회 경북 상주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전남 여주시 의회 전북 김제시 의회 충북 충주시 의회	
5 년 평 가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수원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 경북 안동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 경기 안성시 의회 경북 김천시 의회 경북 영천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전북 군산시 의회	강원 속초시 의회 경기 수원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 경남 사천시 의회 경북 안동시 의회 충남 서산시 의회 충남 아산시 의회	